# 기 안 용 지

| | | | |
|---|---|---|---|
| 분류기호 문서번호 | 도정442- | (전화번호 75-6827) | 전결규정 조 항 전결사항 |
| 처리기간 | | 시장 | 결재 1977.2.28 시장 |
| 시행일자 | | 2.28 | NO.600 |
| 보존년한 | | | |

| | | | | | |
|---|---|---|---|---|---|
| 보조기관 | 제2부시장 | | | 협 | 법무담당관법무심사필 |
| | 도시정비국장 | | | | |
| | 도시정비과장 | | 도시정비2계장 | | 도시정비1계장 |
| 기안책임자 | | | 77. 2. 14 이 제 설 | 조 | 도시정비3계장 |

| | | | | | |
|---|---|---|---|---|---|
| 경 유 수 신 참 조 | 각안참조 | 발신 | 시장 | 통제 | 검열 1977.2.28 |

제 목 도시계획 재개발(청계천7가 제10지구)사업시행자 지정승인 제1안 내부결재

고시제 4P호

1. 건설부고시 제46호(76. 4.7)와 동 고시 제104호(76.7. 14)로 재개발 구역결정 및 세분화 결정고시되어 서울시 고시 제181호(76. 8. 4)로 지적고시한 청계천7가 제10지구에 대하여 토지소유자들은 재개발 사업시행을 조합 구성하여 시행하고저 가칭 청계천7가 제10지구 재개발조합장 홍택선으로부터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시행허가 신청이 있어

2. 내용 검토한 바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도시계획 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도시계획법 제32조 제2항에 의거 재개발지구안의 토지면적의 3분의2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사업시행을 할수 있는 자로 되어 있으므로 본 신청지구는 전체토지 소유자가 본 지구 재개발사업조합(가칭) 조합장 홍택선에게 토지소유자로서 본 사업의 취지와 계획에 찬동하고 사업시행에 대하여 동의하여 시행에 관한 권한을 위임 하였기 . . . . . . .

정서

관인

발송

0201-1-8A (갑)
1969. 11. 10 승 인

190mm×268mm 인쇄용지 (2급) 60g/m²
서 립 소 년 기 술 원 ( 92-0436 )

3.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시행허가를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대통령령 제7754호(75. 3. 22)의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중 개정령 제25조 제11항 제68호의 규정에 의거 별안과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자를 지정 승인코저 하오니 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시안심사 1977. 2. 2 제 47 호
심사자 ... 법무담당관

고 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 호

도시계획(재개발) 사업 시행 허가 (시행자 지정 승인)

1. 건설부 고시 제104호(76. 7. 14)와 서울특별시 고시 제181호(76. 8. 4)로 재개발지구 결정 및 지적고시된 청계천7가 재개발 구역 제10지구에 대한 재개발사업 시행허가(시행자 지정승인)를 도시계획법 제24조 동법시행령 제25조 및 행정권한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5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조건부 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

1977. 2. .

서 울 특 별 시 장

2. ~~시행~~허가 사항

| 지구명 | 위 치 | 지정면적 | 시행면적 | 시행자 | 비 고 |
|---|---|---|---|---|---|
| 청계천7가 재개발구역 제10지구 | 중구신당동 217-70번지 일대 | 2,470m² 747평 | 2,347m² 710평 | 청계천7가제10지구 재개발조합(가칭)성북구 하월곡동204 조합장 홍택선 | 도시계획법 제24조 |

3. ~~시행~~ 허가조건

가. 도시계획 재개발사업 시행허가(시행자 지정승인) 고시 이후 재개발사업 실시 절차를 밟아 5개월이내에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사업을 착수치 않을 경우에는 재개발사업 실시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일방적으로 시행자 지정승인을 행정 취소 한다.

~~나. 재개발사업 시행자인 조합(가칭)이 [illegible] 에 배치되는 ...~~

~~업시행명이나 사업총괄을 ... 없는 경우에는 ... 정하여야 한다.~~ (사장)

제3안

수신 도시계획 청계천7가 제10지구 재개발사업 조합(가칭)

성북구 하월곡동 204번지 조합장 홍 택 선

제목 청계천7가 제10지구 재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승인(시행허가)및

동 재개발 사업 조합 설립 인가

1. 귀 조합(가칭)이 77. 1. 29. 자로 당시에 제출하신도시계획 청계천7가 제10지구 재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조합 설립인가건에 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24조 ~~및 도시구획 정리사업법 76조 동법 ...~~ 규정에 의거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조건부 시행허가 ~~및 조합 설립 인가~~ 하였기 통보 하오니

(결재 1977. 2. 28)

2. 도시계획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규정에 의한 절차를 거처 동법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규정에 의한 재개발 사업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조건부 허가내용을 유의하여 제출하여 실시계획 인가를 득하여 조속 사업 착수 하시기 바라며

3. 본 재개발구역내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공공시설용지(도로, 주차장)등은 시행자가 부담키로 되어 있는 바 이 시행지구의 부담에 대하여는 실시계획인가시 부담율에 의거 결정되는 사항대로 행정방침 결정 조치할 것이며

4. 시행구역내 토지 및 건물 소유자들의 재개발사업계획에 따른 관리처분 계획인가 및 기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의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종전토지 및 건물평가를 2개 공인기관에 의뢰하여야 하오니 평가조서 및 조서 작성 근거자료를 첨부 평가의뢰 하여 주시기 바라며 평가 법정 수수료는 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알려 드립니다.

(단, 시행자가 부담하겠다는 공인 공증서 첨부)

5. 본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인가는 도시계획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6조규정에 의한실시계획 인가시 동시 인가조치할 사항으로 재개발 실시계획에 의한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안

수신 중구청장

제목 동 건

1. 귀구 관내 도시계획 청계천7가 재개발 제10지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4조에 의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시행허가(시행자 지정승인) 되었기 통보하니 재개발사업 시행업무 및 제반행정에 차질 없도록 적극 협조 하기 바람.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 1부 끝.

제5안

수신 건설부 장관

제목 동 건

1. 귀부 고시 제46호(76. 4. 7) 및 동 고시 제104호(76. 7. 14) 및 서울시 고시 제181호(76. 8. 4)로 재개발구역지구로 결정고시된 청계천7가 재개발 제10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시행허가를 하였기 보고 합니다.

첨부: 고시문 사본 및 도면 각1부

제6안

수신 총무처 장관(서울시 공보담당관)

제목 관(시)보 게재 의뢰

1. 당시에서 도시정비의 일환으로 역점사업으로 시행 추진하고 있는 도시계획 재개발 사업 청계천7가 재개발구역 제10지구에 대하여 별첨 고시문 사본과 같이 고시 되었기 통보하오니 관(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관(시)보 게재의뢰: 고시

나. 관(시)보 게재건명: 도시계획 재개발사업(청계천7가 제10지구)시행허가

다. 법적근거: 도시계획법 제24조 ~~도시구획정리사업법 제7조~~

첨부: 고시문 사본 각 1부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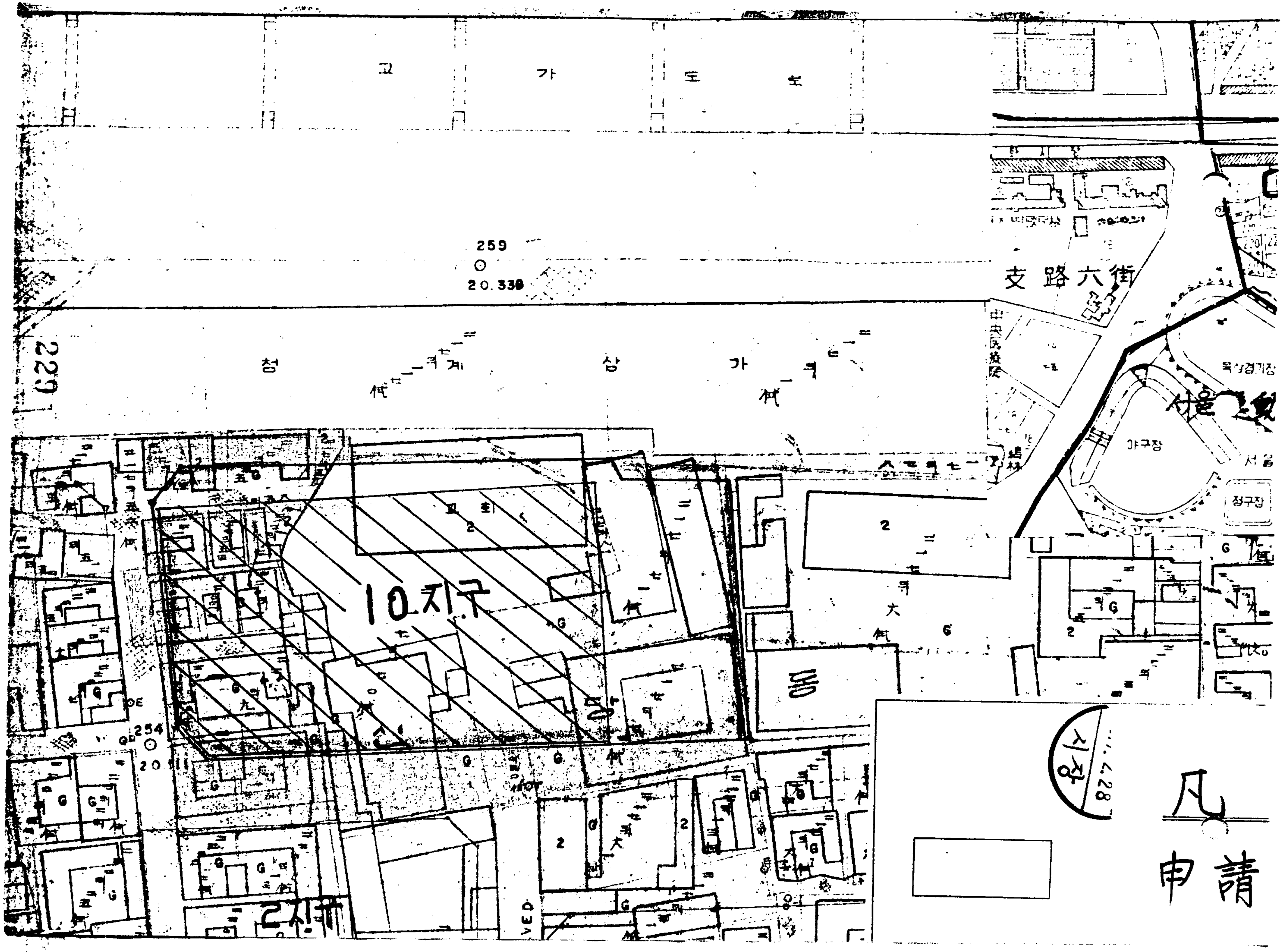
259
20.339
支路六街
229
야구장
정구장
10지구
2지구
254
申請